

# 2022 긴급주거지원사업

개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근거법령 : 「긴급복지사업」 제9조 제1항 다호</li><li>경제위기상황에서 위기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서민계층 보호와 중산층 빈곤주택 방지를 위해 신빈곤층 등 취약계층(긴급지원대상자)에게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등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주거안정 도모 및 자활을 지원</li></ul>
지원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</li></ul>
위기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위기사유(긴급복지지원법 제2조)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주(主)소득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</li><li>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</li><li>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(放任) 또는 유기(遺棄)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</li><li>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</li><li>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</li><li>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,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</li><li>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</li><li>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</li><li>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지하는 경우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주소득자와 이혼한 때</li><li>단전된 때</li><li>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</li><li>가족으로부터 방임·유기 또는 생계 곤란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</li><li>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,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(기관)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</li></ol></li></ol></li></ul>
임대조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75%</li></ul>
문 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주소등록이 되어있는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</li></ul>